

경기도 고시 제2014-271호

안성 원곡물류단지 지정(7차) 및 실시계획(6차) 변경승인 고시

경기도고시 제2014-147(2014.05.28)호로 고시한 「안성 원곡물류단지 지정(6차변경) 및 실시계획(5차변경)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사업기간 및 근린공원내 원형보전지 면적이 변경되어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제28조에 의거 「안성 원곡 물류단지 지정(7차변경) 및 실시계획(6차변경)」을 승인하고 동법 제23조,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, 제23조규정과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1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4. 9. 30.
경 기 도 지 사

1. 물류단지의 명칭·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 - 가. 물류단지 명칭(변경없음)
 - 안성 원곡물류단지
 - 나. 물류단지 위치(변경없음)
 -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
 - 다. 물류단지 면적(변경없음)
 - 면 적 : 682,398.1㎡ (확정측량 결과)
2. 물류단지의 지정 목적(변경없음)
 - 가. 경기도 및 안성시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고, 물류유통 효율화·선진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물류·유통·지원시설 확충하여 도내 지역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서비스 제고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
3.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없음)
 - 가. 경기도시공사
4. 물류단지의 개발기간(변경) 및 개발방법(변경없음)

구 분	내 용		비고
개발기간	기정	2009년 1월 30일 ~ 2014년 06월 30일	-
	변경	2009년 1월 30일 ~ 2014년 09월 30일	
개발방법	공영개발		-

- 변경사유 : 지구 내 근린공원 원형보전지 절토사면에 재해방지시설인 배수구조물(산마루측구) 설치에 따른 원형보전지 일부가 훼손되어 인·허가절차 및 마무리 시공에 따른 추가 사업기간 필요

5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(변경없음)
 - 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고
합계		682,398.1	100.0	-
물류단지 시설용지	소계	396,226.2	58.1	-
	물류시설	396,226.2	58.1	-
지원시설 용 지	소계	12,615.5	1.8	-
	근린생활시설	4,061.2	0.6	-
	주거용지	4,402.9	0.6	-
	주 차 장	4,151.4	0.6	-

경 기 도 보

제5072호

2014. 9. 30.(화)

	구 분	면적(㎡)	구성비(%)	비고
공공시설 용 지	소 계	273,556.4	40.1	-
	공 원	87,246.9	12.8	-
	녹 지	109,590.7	16.0	-
	광 장	5,038.4	0.7	-
	하 천	2,074.0	0.3	-
	유 수 지	9,332.9	1.4	-
	도 로	60,273.5	8.9	

나. 주요 기반시설계획(변경없음)

1) 도로계획(변경없음)

○ 진입도로 계획

- 평택~음성간 고속국도, 평택~이동간 45번국도 등 광역교통망체계와의 연계성 확보
- 평택~이동간 45번국도로 부더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진출입교차로 계획 수립
- 사업지구 남측 연결 도시계획도로로부터의 부출입 교통 고려

○ 단지내 도로계획

- 단지내 도로의 계획은 각 시설에 대한 편리성, 시설간 연관성, 교통의 원활화, 경관형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
- 내부도로망은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곡선형 도로로 계획

구분	폭원(m)	노선(개)	연장(m)	면적(㎡)	비고
계	-	20	4,444	60,273.5	-
중로	-	8	2,584	49,776.9	-
중로1류	20	2	1,373	29,192.8	-
중로2류	15~20	4	875	16,381.4	-
중로3류	12~13	2	336	4,202.7	-
소로	-	12	1,860	10,496.6	-
소로1류	10	1	29	290.6	-
소로2류	8.36	1	327	3,014.8	-
소로3류	4~6	10	1,504	7,191.2	-

주) 가각 및 기타 : 지적확정측량결과 노선별 면적에 포함

2) 주차장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비고
	합계	-	4,151.4	-
기정	주차장	원곡면 칠곡리 929번지 일원	2,717.0	-
기정	주차장	원곡면 칠곡리 927-4번지 일원	1,434.4	-

3) 공원·녹지·광장 계획(변경없음)

○ 공원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
기정	근린공원	원곡면 칠곡리 921번지 일원	87,246.9	-

경 기 도 보

제5072호

2014. 9. 30.(화)

○ 녹지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
	합계	-	109,590.7	-
기정	녹지	원곡면 칠곡리 918번지 일원	48,550.7	사업지구서측
기정	녹지	원곡면 칠곡리 942번지 일원	61,040.0	사업지구동측

○ 광장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
기정	광장	원곡면 칠곡리 917번지 일원	5,038.4	-

4) 우수지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
	합계	-	9,332.9	-
기정	우수지	원곡면 칠곡리 914번지	5,593.9	-
기정	우수지	원곡면 칠곡리 925번지	3,739.0	-

5) 하천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
기정	하천	원곡면 칠곡리 931번지 일원	2,074.0	

6) 폐기물처리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폐기물발생량 (kg/일)	처리방법
합계	12,935.3	-
생활폐기물	1,444.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본 사업예정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 폐기물은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하며, 음식물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은 안성시 청소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할 계획
사업장폐기물	11,490.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본 사업예정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「제3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」에 의거 최대한 재활용 하도록 할 것이며, 재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은 위탁처리 할 계획
사업장 배출시설계		
가연성	11,094.3	
불연성	396.2	
지정폐기물	-	

7) 상수공급계획(변경없음)

구분	계획급수량(㎡/일)	공급계획
상수 공급	566.2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광역5단계(한강계통)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원곡배수지(기존) 를 거쳐 사업지구에 공급할 계획임 ◦ 안성시 상수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사업부지 급수량만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

경 기 도 보

제5072호

2014. 9. 30.(화)

8) 오수처리계획(변경없음)

구분	계획오수량(㎥/일)	처리계획
오수처리	476.1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본 사업지 남측에 설치 예정인 신설 차집관로(D250mm)를 통하여 원곡하수종말처리시설(Q = 1,000㎥)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

9) 통신시설공급계획(변경없음)

구분	전화수요량(회선)	처리계획
통신시설	7,07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한국통신의 관할 전화국으로부터 인입 공급하고, 추가 공급시설은 한국통신과 협의 후 설치할 계획

10) 에너지공급계획(변경없음)

구분	수요량	처리계획
열공급	최대열부하 : 9.24Gcal/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냉난방식은 단위 건물별로 단독냉난방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며, 연료가스 공급은 LPG사용
전력공급	변압기설비용량 : 21,623.2kV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한국전력공사 주변 소사벌 변전소로부터 22.9kV 배전선로 2회선 이상 공급 ◦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

11) 근린공원 세부시설계획(없음)

○ 총괄조서

구분	시설내용	시설면적(㎡)		비고
		부지면적	건축면적	
총계		87,246.9	66.0	
도로 및 광장	도로 및 광장	11,043.6		
조경시설	팔각정자 외 1종	-		
휴양시설	평의자A 외 3종	107.4		
운동시설	족구지주/네트 외 1종	850.2		
편익시설	자전거보관대	2,596.5		
관리시설	종합안내판 외 8종	321.6	66.0	화장실
녹지 및 기타	녹지	72,327.6		녹지율 82.8%

주) 근린공원내 원형보전지 면적(44,726㎡)은 녹지 및 기타에 포함

○ 시설조서

시설구분	번호	시설명	면적(㎡)	수량	비고
공원면적			87,246.9		
도로 및 광장		소계	11,043.6		
		도로(소계)	2,471.1		
		광장(소계)	8,572.5		
	1-1	진입광장1	219.0		
	1-2	진입광장2	873.1		
	1-3	연결광장3	340.4		
	1-4	다목적광장	7,140.0		

경 기 도 보

제5072호

2014. 9. 30.(화)

시설구분	번호	시설명	면적(㎡)	수량	비고
조경시설	(1)	팔각정자		1개소	
	(2)	파고라A		3개소	
휴양시설		소계	107.4		
	3-1	쉼터1	57.1		
	3-2	쉼터2	50.3		
	(3)	평의자A		13개소	
	(4)	등의자		6개소	
	(5)	평상		3개소	
	(6)	앉음벽		2개소	
운동시설		소계	850.2		
	4-1	족구장	646.2		
	4-2	체력단련장	204.0		
	(7)	체력단련시설		1식	
	(8)	족구지주/네트		1개소	
편익시설		소계	2,596.5		
	5-1	주차장1	169.5		
	5-2	주차장2	2,427.0		
	(9)	자전거보관대		1개소	
관리시설		소계	321.6		
	6-1	화장실	210.8		
	6-2	관람석	110.8		
	(10)	종합안내판		1개소	
	(11)	화장실		1개소	
	(12)	관람석케노피		1개소	
	(13)	웬스A		1개소	
	(14)	웬스B		1개소	
	(15)	목재계단A		1개소	
	(16)	목재계단B		1개소	
	(17)	목계단		1식	
(18)	시설안내판		1개소		
녹지 및 기타			72,327.6		

주) 근린공원내 원형보전지 면적(44,726㎡)은 녹지 및 기타에 포함
 ○ 도로조서

경 기 도 보

제5072호

2014. 9. 30.(화)

구분	등급	류별	도면 번호	폭원 (m)	연장 (m)	면적 (㎡)	기 능	기 정	총 점	비고
계					967.7	2,471.1				
	소로	3	1	8.2	146.4	1,200.5	진입로	부지경계	주차장5-2	
	소로	3	2	1.5	43.8	65.7	진입로	부지경계	쉼터3-1	
	소로	3	3	1.5	19.8	29.7	진입로	부지경계	녹지	
	소로	3	4	1.5	171.2	256.8	진입로	연결광장1-3	쉼터3-2	
	소로	3	5	1.5	125.1	187.6	산책로	녹지	쉼터3-2	
	소로	3	6	1.5	241.1	361.6	산책로	부지경계	쉼터3-2	
	소로	3	7	1.5	134.8	202.2	산책로	소로3-8	소로3-6	
	소로	3	8	1.8	19.8	35.6	진입로	진입광장1-2	소로3-7	
	소로	3	9	2.0	65.7	131.4	진입로	부지경계	연결광장1-3	

6. 주요 유치시설 및 유치업종배치계획(변경없음)

가. 주요 유치시설(변경없음)

- 물류단지시설 : 창고, 집배송시설
- 지원시설 : 근린생활시설, 주차장 등

나. 유치업종배치계획(변경없음)

-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배치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배치

7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기타 물건의 세목과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·주소(변경)

◦ 별첨

8.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(변경없음)

-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, 제29조에 의한 국가 등에서 보조 또는 지원하는 기반시설 등

9.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(변경없음)

- 해당사항 없음

10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변경없음)

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용도지역		면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682,398.1	-	682,398.1	100.0	-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19,081.4	-	19,081.4	2.8	-
상업지역	유통상업지역	438,365.7	-	438,365.7	64.2	-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224,951.0	-	224,951.0	33.0	-

나. 용도지구 결정조서(변경없음)

다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도면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1	안성원곡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	682,398.1	-	682,398.1	-

경 기 도 보

제5072호

2014. 9. 30.(화)

라.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1) 도로(변경없음)

가) 도로 총괄표(변경없음)

구분	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
		노선수 (개)	연장 (m)	면적 (㎡)									
합계	기정	20	4,444	60,273.5	3	1,402	29,483.4	5	1,202	19,396.2	12	1,840	11,393.9
중로	기정	8	2,584	49,776.9	2	1,373	29,192.8	4	875	16,381.4	2	336	4,202.7
소로	기정	12	1,860	10,496.6	1	29	290.6	1	327	3,014.8	10	1,504	7,191.2

주) 가각 및 기타 : 지적확정측량결과 노선별 면적에 포함

나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정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물류1	20	집산 도로	1,194	중로1-8	중로1-물류3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중로	1	물류3	20	국지 도로	179	중로1-물류3	중로2-물류4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중로	2	물류1	17.5	집산 도로	554	소로2-물류1	중로1-물류1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중로	2	물류2	15 ~20	집산 도로	128	중로2-물류1	1호광장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4-147 (14.5.28)	-
기정	중로	2	물류3	17.5	집산 도로	111	중로1-물류1	소로3-물류8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중로	2	물류4	16.5 ~20	국지 도로	(221) 82	중로1-물류3	철곡리 151-6임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중로	3	물류1	12	국지 도로	311	중로1-물류1	중로3-물류1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중로	3	물류3	12	국지 도로	25	중로1-물류3	철곡리 155-18창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1-365 (11.12.8)	-
기정	소로	1	물류1	10	특수 도로	29	중로1-8	중로3-물류1	보행자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소로	2	물류1	8.36	집산 도로	327	중로1-물류1	중로2-물류1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소로	3	물류1	6	국지 도로	322	철곡리 128-3도	중로1-물류3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소로	3	물류2	6	국지 도로	12	소로3-물류1	철곡리 856-1구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
경 기 도 보

제5072호

2014. 9. 30.(화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정	종정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3	물류3	6	국지 도로	9	소로3-물류1	칠곡리 132-7답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소로	3	물류4	6	국지 도로	11	소로3-물류1	칠곡리 131-2전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소로	3	물류5	4	국지 도로	806	칠곡리 862-17구	중로2-물류3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소로	3	물류6	4	국지 도로	20	칠곡리 산57-10임	소로3-물류5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소로	3	물류7	4	국지 도로	16	칠곡리 661-8답	소로3-물류5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소로	3	물류8	4	국지 도로	16	칠곡리 348-1전	중로2-물류3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소로	3	물류9	4	국지 도로	271	중로1-물류1	칠곡리 산20임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1-365 (11.12.8)	-
기정	소로	3	물류10	4	국지 도로	21	소로3-물류9	칠곡리 155-11창	일반 도로	-	경기도고시 2012-401 (12.12.13)	-

주) () : 전체 연장
 2) 공원(변경없음)
 ○ 공원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-	-	-	-	87,246.9	-	87,246.9	-	-
기정	1	공원	근린 공원	원곡면 칠곡리 921번지 일원	87,246.9	-	87,246.9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
3) 녹지(변경없음)
 ○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-	-	-	-	109,590.7	-	109,590.7	-	-
기정	1	녹지	완충 녹지	원곡면 칠곡리 918번지 일원	48,550.7	-	48,550.7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사업지구 서측
기정	2	녹지	완충 녹지	원곡면 칠곡리 942번지 일원	61,040.0	-	61,040.0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사업지구 동측

경 기 도 보

제5072호

2014. 9. 30.(화)

4) 광장(변경없음)

○ 광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-	-	-	-	5,038.4	-	5,038.4	-	-
기정	1	광장	교통 광장	원곡면 칠곡리 917번지 일원	5,038.4	-	5,038.4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
5) 하천(변경없음)

○ 하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		연장 (m)	폭원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종점	주요 경과지					
계	-	-	-	-					2,074	-	-
기정	1	하 천	소하천	원곡면 칠곡리 858-2번지 일원	원곡면 칠곡리 153-7번지 일원	-	217	11.2	2,074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
6) 유수지(변경없음)

○ 유수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-	-	-	-	9,332.9	-	9,332.9	-	-
기정	1	유수지	저류지	원곡면 칠곡리 914번지 일원	5,593.9	-	5,593.9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기정	2	유수지	저류지	원곡면 칠곡리 925번지 일원	3,739.0	-	3,739.0	경기도고시 2010-167 (10.5.25)	-

마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○ 물류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	비고
			번 호	위 치	면적(㎡)	
계		396,226.2	-	-	-	
D1	D1	101,271.0	D1-1	원곡면 칠곡리 941창	101,271.0	
D2	D2	10,428.9	D2-1	원곡면 칠곡리 943창	10,428.9	
D3	D3	90,583.0	D3-1	원곡면 칠곡리 915창	37,808.0	
			D3-2	원곡면 칠곡리 916창	52,775.0	
D4	D4	193,943.3	D4-1	원곡면 칠곡리 919창	26,448.0	
			D4-2	원곡면 칠곡리 920창	13,726.2	
			D4-3	원곡면 칠곡리 924창	153,769.1	

경 기 도 보

제5072호

2014. 9. 30.(화)

○ 주거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	비고
			번호	위 치	면적(㎡)	
계		4,402.9	-	-	-	
R1	R1	2,621.0	R1-1	원곡면 칠곡리 926-1대	325.0	-
			R1-2	원곡면 칠곡리 926-2대	325.0	-
			R1-3	원곡면 칠곡리 926-3대	325.0	-
			R1-4	원곡면 칠곡리 926-4대	325.0	-
			R1-5	원곡면 칠곡리 926-5대	325.0	-
			R1-6	원곡면 칠곡리 926-6대	325.0	-
			R1-7	원곡면 칠곡리 926-7대	325.0	-
			R1-8	원곡면 칠곡리 926-8대	346.0	-
R2	R2	1,781.9	R2-1	원곡면 칠곡리 927-1대	296.9	-
			R2-2	원곡면 칠곡리 927-2대	297.0	-
			R2-3	원곡면 칠곡리 927-3대	297.2	-
			R2-4	원곡면 칠곡리 927-7대	297.1	-
			R2-5	원곡면 칠곡리 927-6대	296.9	-
			R2-6	원곡면 칠곡리 927-5대	296.8	-

○ 근린생활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	비고
			번호	위 치	면적(㎡)	
계		4,061.2	-	-	-	
SR1	SR1	4,061.2	SR1-1	원곡면 칠곡리 928-2대	575.0	-
			SR1-2	원곡면 칠곡리 928-3대	570.2	-
			SR1-3	원곡면 칠곡리 928-4대	569.8	-
			SR1-4	원곡면 칠곡리 928-5대	570.0	-
			SR1-5	원곡면 칠곡리 928-6대	763.1	-
			SR1-6	원곡면 칠곡리 928-7대	509.1	-
			SR1-7	원곡면 칠곡리 928-8대	504.0	-

○ 주차장용지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	비고
			번호	위 치	면적(㎡)	
계		4,151.4	-	-	-	
P1	P1	2,717.0	P1-1	원곡면 칠곡리 929차	2,717.0	-
P2	P2	1,434.4	P2-1	원곡면 칠곡리 927-4차	1,434.4	-
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대한 도시
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○ 물류시설용지(변경없음)

경 기 도 보

제5072호

2014. 9. 30.(화)

도면번호	위치	구분	물류시설용지	
D1-1 D2-1 D3-1 D3-2 D4-1 D4-2 D4-3	원곡면 칠곡리 924창 일원	용도	도면표시	D
			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참고시설 ◦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◦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 집배송시설 ◦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공동집배송센터 ◦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
			불허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◦60% 이하	
		용적률	◦250% 이하	
		높이	◦5층 이하	
		배치	-	
		형태	-	
		색채	-	
	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. - 전면도로변: 5m, 녹지변: 3m, 국도45호선녹지변: 15m 	

○ 주거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치	구분	주거시설용지	
R1-1 ~ R1-8, R2-1 ~ R2-6	원곡면 칠곡리 926-1대 일원	용도	도면표시	R
			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(다중주택, 공관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※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일반음식점, 기원, 나목 휴게음식점, 제과점, 다목 서점, 라목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골프연습장 등, 마목 공연장, 종교집회장, 바목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업소, 출판사 등, 자목 사진관, 표구점, 학원 등※
			불허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◦60% 이하	
		용적률	◦150% 이하	
		높이	◦3층 이하	
		배치	-	
		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지붕 :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 이외의 형태로 한다. 다만, 부대시설은 예외로 한다. ◦담장 : 도로와 면하는 부분의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하며, 필요한 경우 1.2m이하의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한다. 	
		색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 ◦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한다. 	
	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. - 전면도로변:1m, 녹지변:2m 	

※ : 주거지이외의 용도(제1,2종 근린생활시설)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40%를 초과할 수 없다.

경 기 도 보

제5072호

2014. 9. 30.(화)

○ 근린생활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치	구분	근린생활시설용지	
SR1-1 ~ SR1-7	원곡면 칠곡리 928-2대 일원	용도	도면표시	SR
			허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시설(자목 중 장의사, 차목의 단란주점, 타목의 안마시술소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다목 관람장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(납골당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타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및 오피스텔, 금융업소, 사무소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나목 전신전화국, 라목 통신용시설
			불허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◦60% 이하	
		용적률	◦200% 이하	
		높이	◦4층 이하	
		배치	-	
		형태	◦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시형으로 권장한다.	
		색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 ◦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. 	
	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를 공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. - 전면도로변:3m, 녹지변:2m ◦공개공간의 지상에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시설(조경,파고라,휴게 의자 등)을 제외한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. 	

○ 주차장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치	구분	주차장용지	
P1-1 P2-1	원곡면 칠곡리 929차 일원	용도	도면표시	P
			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주차전용건축물, 단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의거 주차 전용건축물 설치 시 전체 건축면적의 30%이내 범위에서 아래 시설의 설치 가능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자목의 장의사, 차목의 단란주점, 타목의 안마시술소 제외)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다목의 관람장 제외)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소매시장, 다목 상점
			불허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경 기 도 보

제5072호

2014. 9. 30.(화)

도면번호	위치	구분	주차장용지
		건폐율	◦60% 이하
		용적률	◦200% 이하
		높이	◦4층 이하
		배치	-
		형대	-
		색채	-
		건축선	◦주차장부지에 주차용도 및 주차용도이외의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- 전면도로변:3m, 녹지변:2m

3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○ 교통처리계획(변경없음)

구분	계획내용
물류단지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	◦대지 내 차량출입 - 「차량출입불허구간」으로 지정된 곳에는 차량 출입을 할 수 없다. - 차량의 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보행로,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.

○ 대지 내 공지에 관한계획(변경없음)

구분	계획내용
물류단지시설용지	◦전면공지 - 전면공지에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. -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(보도가 없을 경우)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며,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. 다만,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 - 주차출입구가 설치될 경우, 보행공간으로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 하도록 주차출입구와의 경계부에 단주 등을 설치한다. - 보도와 연접한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. ◦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 -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은 「건축법」, 「안성시 건축조례」 등 관련 법령·지침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근린생활시설용지	◦전면공지 - 전면공지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. -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 -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길이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대지내 공지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, 담장, 계단, 주차장,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. 단, 차량의 간 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블라드,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-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,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한다. 그리고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구분	계획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처리: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(보도가 없을 경우)와 높이차이가 없어야 한다. - 적용의 예외:지구단위계획상 보도의 확장 외의 목적으로 지정된 대지내 공지는 위의 단처리와 포장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,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처리도 예외로 한다. ◦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 -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은 「건축법」, 「안성시 건축조례」 등 관련 법령 ·지침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○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계획내용
물류단지시설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물류시설용지 입주업체의 홍보 및 안내와 관련없는 내용에 대한 간판, 입간판, 현수막, 벽보의 게시를 할 수 없다. ◦돌출간판은 다른 돌출간판과 동일크기로 상·하 일직선상에 위치시키도록 한다. ◦건물외부에 면하는 창에는 창문이용광고물(선팅 등)을 일체 붙일 수 없다. ◦옥외광고물의 설치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, 경기도에서 규정한 「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 등 관련법 및 관련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근린생활시설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광고물의 수량은 업체당 2개 이내로 한정한다. ◦가로형 간판의 설치는 2층 이하에 한정한다. ◦돌출간판은 다른 돌출간판과 동일크기로 상·하 일직선상에 위치시키도록 한다. ◦건물외부에 면하는 창에는 창문이용광고물(선팅 등)을 일체 붙일 수 없다. ◦옥외광고물의 설치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, 경기도에서 규정한 「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 등 관련법 및 관련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11.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등(변경없음)

○ 게재 생략

12. 물류단지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○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25조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

13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(변경없음)

○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성시 지역경제과에 비치(☎031-678-5454) 하고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
■ 별첨 :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

가. 토지조서(변경)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	
				구분	공부	편입	성명	주소	지분	성명	주소		권리명
1	칠곡리	127-7	전	기정	560.0	560.0	경기도시공사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					확정측량에 따른 등기 말소 예정
2	칠곡리	128-2	도	기정	152.0	152.0	경기도시공사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					확정측량에 따른 등기 말소 예정
3	칠곡리	128-5	임	기정	146.0	146.0	경기도시공사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					확정측량에 따른 등기 말소 예정
4	칠곡리	128-6	답	기정	312.0	312.0	경기도시공사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					확정측량에 따른 등기 말소 예정
5	칠곡리	128-7	도	기정	177.0	177.0	경기도시공사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					확정측량에 따른 등기 말소 예정